

201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07.08. ~ 2019.07.19.(10일간)
- 감사범위 : 2017.11.01. ~ 2019.05.31.(1년7개월)

□ 감사결과 : 지적건수 31건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20건 권고 2건	재정상	부과 1건	신분상	
-----	--------------------------	-----	-------	-----	--

※ 재정상 조치 : 부과 1건 / 금00,000,000원

※ 청렴시민감사관 자문 1건

감 사 관
(감 사 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상하수도관리센터는 2017년10월에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17년 11월 이후 상하수도 관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의 적정여부, 상·하수도 관련 공사의 적정 처리 및 시설물 사후 처리 실태,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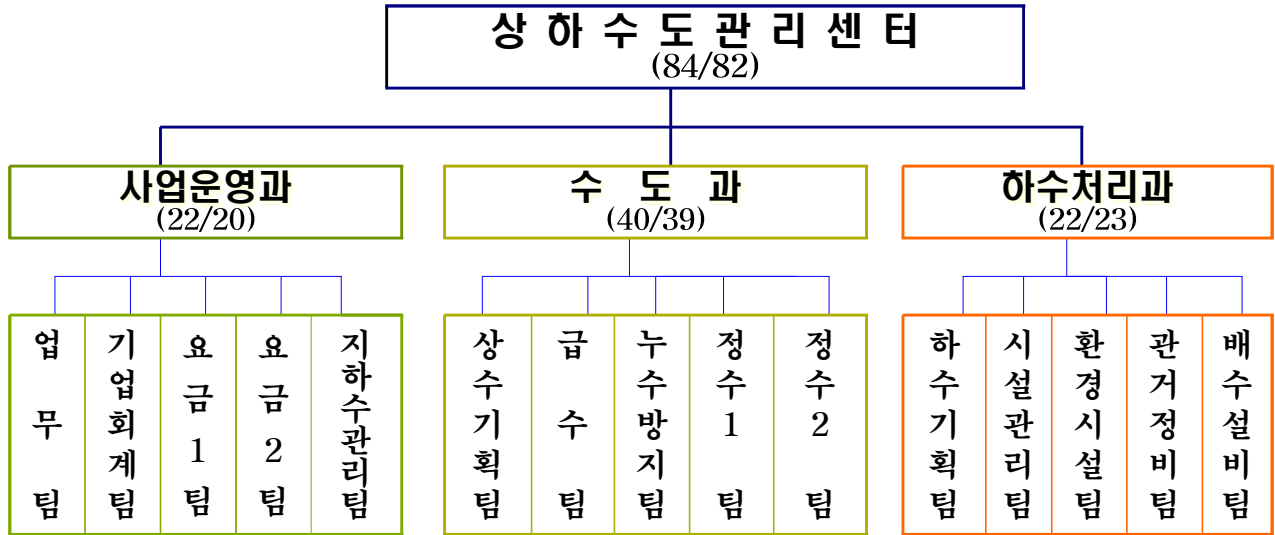
서면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 지적사항, 타 시·군 감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감사 일정을 2019. 7. 1. 우리시 홈페이지 「감사계획 및 결과공개」란 및 네이버 카페 「남양주 청렴한 세상이야기」 알림마당에 게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9. 7. 8.부터 7. 19.까지(10일간)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하고 청렴시민감사관 2명이 참여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인 2019. 7. 19.에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확인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

1. 조직 현황



2.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정원	84	1	3	20	28	19	13	
	현원	82	1	3	30	21	13	16	
사업운영과	정원	22	1	1	5	5	8	2	상용직 36명 기간제 4명
	현원	20	1	1	6	5	2	5	
수도과	정원	40	-	1	10	15	5	9	상용직 1명 기간제 2명
	현원	39	-	1	17	8	6	7	
하수처리과	정원	22	-	1	5	8	6	2	사용직 10명
	현원	23	-	1	9	5	3	5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요약

(단위 : 건, 명, 천원)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부과	회수	환급	계	경고	훈계
31	9	20	2	1 (00,000)	1 (00,000)	-	-	-	-	-

감사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규정미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건의 개선(권고)을 요구, 29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1건 00,000,000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한 1건은 감사기간 중 주의 등의 현지조치 요구하였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상수도 기반시설 확장,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환경 체험장을 제공하고자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하천유지와 자연친화적 청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직권남용이나 고의적인 위법처리 등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적은 없었으나, 일부 직원들의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와 관련법령 숙지 부족,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세 체납관리 소홀, 민원사무 처리 절차 부적정, 공사 설계 도서 검토 소홀 등 총 31건의 경미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시정·개선이 필요하며,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르면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개정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등을 소극행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상하수도관리센터 종합감사에서도 이전 감사 시 ‘시정’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 하지 아니하고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한 행태 등 일부 소극행정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할 필요가 있다.

□ 부서 자가점검¹⁾ 결과

연번	자가점검 목록	점검결과(조치계획)	비고
1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점검	- 이상없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점검	- 이상없음	
3	사회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정산 점검	- 이상없음	

1) 부서 자체에서 감사 실시 전, 자가점검 대상 목록에 대하여 감사관에서 제시한 점검 방법으로 사전 체크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감사 및 처분 제외)

2.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불용처분 및 매각 부적정	NO. 1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에서는 00대의 업무용 공용차량을 불용결정하고 처분함에 있어, 00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00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각각 00만원의 평가액이 나왔음에도, 3대 모두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여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00만원~00만원)으로 처분하여 세입에 손실을 초래하고 물품 불용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주의)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NO. 6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는 〇〇읍 〇〇리 00-00번지(건축주 : (주)B) 허가 건의 경우 증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이 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데도 00,000,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 및 미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00,000,000원에 대하여 부과조치(시정)

3	수도관 시설장 관사 운영 부적정	NO. 11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는 〇〇배수지 등 총 0개소 시설장 관사(사용 0개소, 미사용 0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사 사용허가, 사용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사 운영에 대한 내부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자체 내부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설장 관사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시정)

4	배수설비 준공신청서 민원처리 부적정	NO. 15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에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처리 하면서 민원인이 신청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즉시 접수하지 아니하고 최소 00일에서 최대 000일까지 보류해 둔 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해당 시), 현장확인 및 구두상 서류보완 완료 후 민원처리 시점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한 민원문서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민원처리 하는 등 총 000건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사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주의)

5	오수관로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NO. 18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에서는 『○○동(○○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조기층의 시공에 소요되는 혼합골재 소요량 514m³ 중 최소 40%인 000.0m³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보조기층의 시공에 소요되는 혼합골재 소요량 중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조치(시정)

6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소홀	NO. 24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에서는 공사금액 3억 원 이상인 『○○리 ○○

☐☐☐☐ 및 ☐☐☐☐☐☐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착공 전 날까지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건설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조정 또는 반환 요구하였어야 하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후 준공처리하여 재해 예방기술지도계약으로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주의)

7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선임 부적정	NO. 25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는 『20■■년 0권역 ☐☐☐☐공사 단가계약(0차) (□□읍 등 0개소)』, 『□□읍 □□리 00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도급자가 공사 착공계 제출 시 보일러시공기능사, 수질환경초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부적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주의)

8	송수관로(강관) PT시험 수량 적용 부적정	NO. 30
----------	--------------------------------	---------------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는 송수관의 개당 연장 6.0m를 고려 시 소요 되는 용접관의 접합개소는 약 000개소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용접관 접합개소(0,000개소)와 비교 시 약 0,000개소 수량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접합개소의 2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침투탐상시험(PT) 역시 적정 수량은 약 000회

이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침투탐상시험(PT) 000회와 비교 시 약 000회가
과다 산정되는 수량 오류가 발생되어 용접관 이음부 검사(PT) 수량 적용 오류로
인한 도급비 약 00,000천 원이 과다 산정된 사실.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및 정산 시 과다 산정된 비용을 감안하여 정산조치(주의)